2018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신청 안내

Ⅰ. 신청 대상

○ 2018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Ⅱ.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지원계획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 지원요건 ·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
⇩	
구비서류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편의신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일체를 제주지방우정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한 : 2018. 6. 5.(화) ~ 6. 8.(금)** ※ 제출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 제출처] :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064-728-5964) (㉾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팩스 0505-005-2291) ※ 하지지체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팩스로 송부 가능

Ⅲ. 편의지원 관련 유의 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6.6.8. 이후 발급)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야 함)

3. 의사진단서(소견서)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예시된 각 장애유형별 의사진단서 샘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밑줄 참조)을 누락됨 없이 진단서에 확인받으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른 편의를 제공합니다.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붙임의 해당 서류 제출처로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Ⅳ.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등

▣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미만인 자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진단서** :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소견서 불인정) ※ **제출기한 : 2018. 6. 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두 눈의 교정시력(좌, 우 각각 명시)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1, 우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 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1.2배) : 60분→70분**

▣ 시각장애인 중 기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제출기한 : 2018. 6. 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1~3급) · 상이등급(1~3급)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진단서** :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소견서 불인정) **※ 제출기한 : 2018. 6. 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2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 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 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연장(1.2배) : 60분→70분**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경증(4~6급) · 상이등급(4~7급)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제출기한 : 2018. 6. 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중증(1~3급) · 상이등급(1~3급)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의사진단서** :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소견서 불인정) ※ **제출기한 : 2018. 6. 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ex)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됩니다.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연장(1.2배) : 60분→70분**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경증(4~6급) · 상이등급(4~7급)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제출기한 : 2018. 6. 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확대문제지(A3 118%, A3 150%)** ▶ **확대답안지(A3 표기형, A3 기입형)**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 임신부

지원요건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 임신부**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제출기한 : 2018. 6. 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임신부≫** **▣ 의사 소견서 1부** **※ 제출기한 : 2018. 6. 8(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ex) 상기인은 임신( )주, 필기시험 예정일(2018.7.21.)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 하지 지체장애인 : 별도(저층)시험장(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 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